

의 정 정 보

2007 - 10

10. 10.

1.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2.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31
3. 최근 타 시도 제정조례	49
4.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60
〈부록〉 : 행복한 책임기	74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집 판매

〈질 의〉

귀 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 한명숙예비후보자와 신기남예비후보자가 공동으로 출간한 「교육 매니페스토」 책자의 판매불가 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2. 문 1의 이유가 상대후보 공약에 대한 비판이라면 책자의 내용중 38~42p를 삭제 후 재출간하는 경우 판매가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문 2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상세이유는 무엇입니까?

※ 참 고 : 「교육 매니페스토」 책자의 주요내용

1. 인사말(2~5p) : 한명숙, 신기남

- 한명숙 : ‘사람에게 투자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는 주제의 인사말
- 신기남 : ‘정책선거로 이끌어 가겠습니다’라는 주제의 인사말

2. 교육현실(8~15p) :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소개

3. 교육혁명(16~37p) : 교육분야 공약소개

- 교육혁명의 출발점 : 교육적령기에 집중된 과도한 투자를 성인학습으로 분산
- 대학체계를 개편하자 : 취업률 높은 전문대학 집중지원, 직업교육중심대학의 집중육성,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일반대학을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환 등
- 맞춤형교육 : 교과과목별 점수제 폐지, 개인별 교육계좌제 도입
- 무상교육확대와 등록금후불제 :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의무교육 실현, 대학교 등록금후불제 실시
- 교육행정체계 개편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지역의 사회와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행정 실시
- 교육혁명에 드는 재정 : 약40조원, 교육재정을 GDP대비 6% 증가시 가능
- 평생학습시스템흐름도 :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

4. 이명박 교육정책이 현실화된다면(38~42p) :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 고교평준화 포기 : ‘자립형 사립학교와 특목고 대폭확대’ 공약은 사실상 고교평준화의 포기
- 공교육의 황폐화 : ‘단위학교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공약은 장사마인드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며,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력격차 적극해소’ 공약은 각 학교를 일류대에 많이 보내기 경쟁에 올인시키겠다는 것임
- 일류대는 부유층의 전유물 : ‘대학교 학생선발과 학교운영의 자율화’ 공약은 서울대 중심의 획일적인 서열화 구조를 고착화 및 가속화 (2007. 9. 3. 대통합 민주신당 대통령예비후보 한명숙 질의)

《답 변》

문 1·2·3에 대하여

귀문의 책자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교육 매니페스토를 실천하기 위하여 발간한 선거공약집으로 보이는 바, 선거공약집 또는 정책공약집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작성·배부하거나 정당이 같은 법 제138조의2에 따라 작성·판매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작성하여 배부·판매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될 것이므로 행위 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7. 9.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 입법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감사패 제공 등

《질 의》

공명선거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9월 18일 지역구(울산 북구)에서 국회의원 본인의 음반 출반기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를 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기여한 수명의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던 ‘창덕 에버빌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가 9월 18일 개최되는 음반 출반기념회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기여한 윤두환 국회의원(당해 법률을 심사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국회의원이 참석자에게 커피 등 간단한 음료(다과는 아님)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2007. 9. 7. 국회의원 윤두환 질의)

《답 변》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7. 9.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3 지방자치단체의 실버문화사랑축제 공동개최

《질 의》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회는 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8302호)에 의거 설립, 문화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특별법인이며 2004년부터 국무총리복권위원회 및 문화관광부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 76개 문화원에 ‘실버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우리회는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 ‘실버문화학교’ 수강 어르신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축제인 <2007실버문화사랑축제>를 아래와 같이 고양시와 공동개최할 예정으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행사명 : 2007실버문화사랑축제(최초행사년도 : 2006년)
- 일시 : 2007. 10. 20(토) ~ 22(월)
- 장소 : 고양시 꽃전시관
- 행사내용 : 76개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 수강생의 프로그램발표회
- ※ 2007 실버문화사랑축제 프로그램 주요내용
 - 주요 프로그램 : 작품 및 사진전시, 시조창·민요 등 각종 공연, 전통 공예 체험, 문화유산·풍수지리강연, 전통혼례·마당극·장수춤 등
 - 기타 프로그램 : 영상유언봉사, 가훈써주기, 건강마사지, 바자회 등
 - 부대이벤트 : 먹거리장터, 실버아티스트 초청공연, 나의꿈 발표무대 등

□ 질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고양시)와 공동개최 가능여부(공동개최시 행사장소 사용료 면제)
 2. 고양시 행정지원 : 행사홍보 및 집객을 위한 고양시의 행정지원
- (2007. 9. 10.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법령에 따라 수립·시행한 정부의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귀문의 행사를 공동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2007.9.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회답)

4 인터넷사이트에 입후보예정자의 병역 게재

《질 의》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병역사항을 공개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입후보예정자들의 병역 이행 여부가 중요한 관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는 유언비어가 많아서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질문요지를 정리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 정당의 경선후보자와 유력한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의 병역 이행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07. 9. 11. 백종철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게시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7. 9.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회답)

5 지방자치단체의 전국노인건강대축제 개최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부에서 주관하는 정기적인 전국적 행사에서의 통상적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동행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대회조직위원장(전라남도지사)의 시상(상장, 시상금, 격려금, 입장상) 및 대회 관중으로 참여한 어르신에 대한 간식(빵, 우유 등)제공 등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개요

- 기 간 : 2007. 10. 12(금) ~ 10. 14(일) 3일간
- 장 소 : 전남 목포 유달경기장 외 6개소
- 참가자 : 16개 시·도 어르신 선수 3,000여명, 지자체 공무원 등
- 주 최 :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목포시
- 주 관 :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 전남도지사),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집행위원회(위원장 : 목포시장)
- 주요행사 : 개막행사, 분야별경기(13종목), 부대행사

□ 시상관련 규정사항

- 제2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 기본계획 복지부장관 결재득('07. 2. 23)

□ 시상

- 상장 및 상패: 1~5위까지 상장 및 트로피 수여
- 격려금 지원 : 전 참가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격려금 지원가능
- ※ 전국대회 시상금은 최고 50만원(1등), 지역예선전 시상금은 최고 30만원(1등) 조정
- 전국대회 및 지역예선전 최고 시상금 준수
- 전국대회 시상금(최고 50만원), 지역예선전 시상금(최고 30만원)
- ※ 격려금 지원 : 전 참가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격려금 지원 가능

□ 질의내용

1. 대회조직위원장 명의로(전남지사가 조직위원장 명의로) 입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시상금 : 50만원 이하 및 트로피)을 수여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가?
2. 시상금 외에 전 참가팀에게 격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가? (대회조직위원장 명의로)
3.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추진계획에 개회식 행사로 입장상을 수여하기로 되어 있는 바, 입장을 멋있게 연출한 시·도에 대해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가? (대회조직위원장 명의로)
4. 경기진행시 관중으로 참석하실 목포시 경로당 어르신에게 간단한 간식(빵과 우유)과 모자를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가? (2007. 9. 17. 보건복지부장관 질의)

《답 변》

1. 문 1 내지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부가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시행한 노인복지관련 지침의 범위안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무방할 것임. 다만, 귀 문 4와 같이 동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행사 참석자에게 간식·모자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07. 9.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6 중소기업중앙회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

《질 의》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입니다. 금년 12월에 개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공직선거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정치 관여행위의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귀 위원회의 조속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1. 본회 정회원의 대표, 본회 임직원 및 산하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출마 희망자 등(이하 ‘대선 후보자’라 함)을 초청, 본회 주최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제 정책에 대한 대선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상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본회 정회원의 대표, 본회 임직원 및 산하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주최로 “(가칭)중소기업인 재도약 결의대회”를 개최할 경우, 대선 후보자를 초청하여 강연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상 가능한지 여부

3. 질문 1과 질문 2에 있어 동 행사의 개최가 가능한 경우, 유력한 대선 후보자만 초청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상 가능한지 여부

4. 질문 1의 경우, 대선후보자를 제외하고 각 정당의 당직자를 초청하여 경제관련 토론·대담회를 개최하고 각 정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상 가능한 것인지 여부

5. 언론기관 주최로 대선후보자간 TV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본회가 동 행사 개최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동 행사를 공식 후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상 가능한 것인지 여부 (2007. 9. 19. 중소기업중앙회장 질의)

《답 변》

1. 문 1·2·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7. 5. 18. 대한상공회의소의 질의에 대한 2007. 5.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기 바람. 다만, 입후보예정자에게 강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간의 기회균등을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

2. 문 5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귀문과 같이 언론기관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초청 대담 · 토론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그 토론회를 후원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87조제1항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7. 9.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첨부파일 참조

【덧붙임】

중소기업중앙회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입니다. 금년 12월에 개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공직선거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정치관여행위의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귀 위원회의 조속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1. 본회 정회원의 대표, 본회 임직원 및 산하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출마 희망자 등(이하 ‘대선 후보자’라 함)을 초청, 본회 주최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제 정책에 대한 대선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상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본회 정회원의 대표, 본회 임직원 및 산하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주최로 “(가칭)중소기업인 제도약 결의대회”를 개최할 경우, 대선 후보자를 초청하여 강연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상 가능한지 여부
3. 질문 1과 질문 2에 있어 동 행사의 개최가 가능한 경우, 유력한 대선 후보자만 초청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상 가능한지 여부
4. 질문 1의 경우, 대선후보자를 제외하고 각 정당의 당직자를 초청하여 경제 관련 토론·대담회를 개최하고 각 정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상 가능한 것인지 여부
5. 언론기관 주최로 대선후보자간 TV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본회가 동 행사 개최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동 행사를 공식 후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상 가능한 것인지 여부

(2007. 9. 19. 중소기업중앙회장 질의)

【 답 】 1. 문 1·2·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7. 5. 18. 대한상공회의소의 질의에 대한 2007. 5.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기 바람. 다만, 입후보예정자에게 강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간의 기회균등을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

2. 문 5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귀문과 같이 언론기관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초청 대담·토론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그 토론회를 후원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87조제1항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7. 9.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상공회의소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강연회 개최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상공회의소법」 제55조의2의 ‘정치적 중립’ 조항과 관련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2007년 12월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의 출마희망자 등을 초청하여 아래의 각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귀 위원회의 조속한 유권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1.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장·부회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선거의 출마희망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그의 경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상 가능한지 여부?
2.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불특정 다수의 기업인(상공회의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선거의 출마희망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고 그의 경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상 가능한지 여부?
3. 문 1 및 2의 경우 대통령선거의 출마희망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대담토론회 또는 강연회에 참석하여 발언 중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경우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상공회의소법」 상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게 되는지 여부?
4. 「공직선거법」 상 개최가 가능한 강연회의 경우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일부 대통령선거의 출마희망자, 예비후보자만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고, 다른 일부 대통령선거의 출마희망자, 예비후보자와의 강연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그의 개최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상 가능한지 여부?
5.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특정 정당의 당직자(대통령선거의 입후보 예정자가 아님)를 초청하여 경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정당의 경제 관련 정책을 청취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상 가능한지 여부?

(2007. 5. 18. 대한상공회의소 질의)

【 답 】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를 포함함)를 초청하여 그의 정견·공약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1조제1항·제87조제1항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그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를 초청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강연회에서 선거공약을 발표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상공회의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으므로 귀문의 단체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4. 문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는 등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규정(「공직선거법」 제9조)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5. 문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방할 것임.

(2007. 5.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7 선거일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 '07. 12. 19. 실시 제17대 대통령선거 -

다음 안내사항은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90일(2007. 9. 20)부터 선거일(12. 19)까지 실시할 수 있거나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안내되지 아니한 상시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배부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예시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법 안내 개요

1. 선거일전 90일부터 중앙당과 후보(예정)자는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가능
2.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함.
3. 선거일전 90일부터 정당·후보(예정)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금지, 후보(예정)자는 광고 출연 금지
4.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5. 선거일전 90일부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
6. 선거일전 90일부터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7.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1.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조의4]

□ 공직선거법 개요

- 청구주체 : 중앙당,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 청구요건 :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 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청구기간 : 선거일전 90일(9. 20)부터 선거일(12. 19)까지
 - 제기기한 :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 제척기간 :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 청구대상 및 방법
 - 해당 방송사·언론사에 서면으로
 -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 청구
 - 청구후 처리과정
 - 방송사·언론사는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중앙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
 - 협의가 성립된 경우 방송은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 방송 실시, 정기간행물은 선거일까지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 게재
- ※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되는 지역에 배부되는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가 부담함.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앙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함.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중앙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

□ 관련 판례

○ 반론보도청구권이 원문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진실에 부합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된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그 권리 행사의 요건이 아니며 진실에 부합되는 보도내용에 대하여도 반론보도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1997. 6. 10 서울고법 판결 96라265).

2.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에 대한 특별제한(법 제60조②)

□ 공직선거법 개요

○ 제한주체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제한내용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07. 9. 20)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사직시점 :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3.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 공직선거법 개요

○ 금지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9. 20)부터 선거일(12. 19)까지

○ 금지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예 외 : 선거기간이 아닌 때('07. 11. 26까지)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가능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 질의선례

○ 입후보예정자의 신앙간증·건강강연 포스터 광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신앙간증 또는 건강강연을 홍보하기 위한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사진이 게재된 포스터를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거리 등에 첩부·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도 위반될 것임(2004. 1. 31 회답).

○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이전 신문광고

변호사사무소의 이전을 알리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신문광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 다만, 변호사사무소의 이전을 알리기 위한 광고라고 하더라도 선거구민에게 배부되는 신문에 계속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에 해당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것은 같은 법조 제2항의 규정에도 위반될 것임(2004. 2. 10 회답).

○ 입후보예정자 관련 서적광고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기 위한 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서적광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7. 5. 31. 회답)

○ 국회의원의 공익광고 출연

국회의원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선거운동 목적 없이 단순히 광고제작사의 요청에 의하여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공익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인 국회의원이 공익광고에 출연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제2항 또는 제94조(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5. 10. 6. 회답)

4.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⑤)

□ 공직선거법 개요

- 금지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9. 20)부터 선거일(12. 19)까지
- 금지내용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 질의선례

○ 출판기념회 개최시기

[문] 공직선거법 제103조제5항에서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은 자신의 저서와 관련한 출판기념회를 언제까지 개최할 수 있는지?

[답]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개최할 수 있을 것임.(2007. 5. 29. 회답)

○ 입후보예정자의 서적출판 등

1.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책출간이 선거일전 90일 이후라 하더라도 책출간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 ‘홍길동의 서울명소 이야기’ 1, 2, 3권이라고 할 때 1권은 선거일전 90일 전에 출간하고 2권, 3권은 선거일전 90일 이후 즉, 3월초, 3월말에 출간해도 상관없는지, 또 출판은 1, 2, 3권 모두 선거일전 90일 전에 출판하되 2권, 3권은 3월초, 3월말에 서점에서 판매해도 되는지?

⇒ 「공직선거법」 상 서적의 출판이나 판매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문의 서적을 출판하여 통상적인 방법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 책의 표지에 저자의 이름이 명기되어도 되는지(예 : ‘홍길동의 서울명소 이야기’ 등)와 함께 다른 통상적인 책과 마찬가지로 저자(출마예상자)의 사진이 책표지에 들어가도 되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3. 책 홍보와 관련하여 포스터를 제작. 포스터는 책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책표지, 책제목만 들어감.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종로구청장 후보라 할 때 종로구 서점뿐만 아니라 서울의 유명대형서점에 포스터를 제작·배포가 가능한지?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경기도지사 후보라 할 때 경기지역 서점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유명서점에도 포스터를 제작·배포가 가능한지?

또한, 책광고와 관련하여 언론에 광고를 하려고 함.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수원시장이라고 할 때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지에만 또는 수원지역신문에만 책 광고를 할 수 있는지? 광역단체장 후보일 경우 경지도지사 후보라 할 때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지에만 책 광고를 할 수 있는지?

⇒ 출판사가 선거일전 90일전에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없이 자사가 출판한 저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저자의 사진을 부각시키거나 귀문과 같이 광고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서적광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그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6. 2. 13. 회답)

5.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제111조)

□ 공직선거법 개요

- 제한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제한기간 : 선거일전 90일(9. 20)부터 선거일(12. 19)까지
 -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 : '08. 1. 10 ~ 4. 9
 - ※ 의정활동보고 가능기간 : '07. 12. 20 ~ '08. 1. 9(제18대 총선 선거일전 90일전일까지)
- 제한내용 :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 등에 의한 의정활동보고 금지
- 예 외 :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판례

○ 의정보고제한기간 중 자원봉사자 교육목적의 의정활동 설명

공직선거법 111조는 선거일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보고서를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보여 준 상대방이 자원봉사자들이고 그 목적이 동작구의회에서 행한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실적을 설명하는 행위는 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1996. 9. 10 대법원 96도1469).

6.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법 제137조)

□ 공직선거법 개요

○ 제한기간 : 선거일전 90일(9. 20)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11. 26)까지

※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의 신문광고가 금지됨.

○ 제한내용

-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 횟 수 : 총 7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더라도 1회로 봄.

- 매 체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

- 규 격 : 가로 37cm 세로 17cm 이내

- 방 법

◦ 전면광고면을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기사란 밑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에 게재

◦ 광고주명과 광고근거를 표시

※ 광고근거 :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 게재내용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광고절차

- 인증서 교부신청

- 신청기간 :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
- 신청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신청서식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일간신문사 등과 광고계약 체결

- 광고게재 신고

- 신고시기 : 광고게재일 전일까지
- 신고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서식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가)

※ 신고시에는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광고요금 산정

선거기간 중에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 주요 질의선례

○ 정강·정책의 광고대상 일간신문 등

1. 정당기관지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 등의 적용대상이 아님.
2. 주간 단위의 신문·잡지·월간지·격주간지·연합연감·보도사진연감 등도 제137조의 적용대상이 됨(1995. 4. 7 회답).

7.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법 제137조의2)

□ 공직선거법 개요

○ 제한기간 :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9. 1)부터 선거기간개시
일전일(11. 26)까지

※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이 금지됨.

○ 제한내용

- 연설자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

- 횟 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월 2회 이내

※ 연설횟수에는 재방송을 포함하며,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 시 간 : 1회 20분 이내

- 방송내용

◦ 정당의 정강·정책만을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
용의 연설은 할 수 없음.

◦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
습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영은 가능

◦ 텔레비전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
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 비용산정 및 부담

◦ 선거기간 중에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
종 광고요금 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 당해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연설하는 경우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 제외)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부담함.

□ 주요 질의선례

○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을 하는 자

[문] 「공직선거법」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 이내로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 자당 소속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를 지명하여 방송연설을 할 수 있는지?

[답] 귀문의 경우 무방함.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2006. 4. 17. 회답)

⑧ 학력 게재에 관한 선거법 안내

1.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4조(선전벽보) 제1항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성명·기호···(중략)··· 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후보자등록 등록등)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 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하생략).

2. 용어의 정의

① 정규학력의 의미

㉠ 법 제250조제1항, 제64조제1항 소정의 ‘정규학력’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정식의 규정에 의하여 수학한 이력’을 뜻하므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즉 유치원,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대학원, 각종 학교를 졸업·중퇴·수료·수학하거나 재학 중인 이력만을 말하므로입학자격의 제한이 없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지 아니한 누구라도 그 과정에 들어가 수학할 수 있는 대학원 연구과정은 이를 수학하였다 하여도 정규학력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동문회라는 것은 같은 학교의 과정을 함께 수학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므로 그 속에 이미 “수학한 이력” 즉 학력이라는 개념이 당연한 전제로서 내포되어 있고, 졸업·중퇴·수료·수학·재학 중 등의 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정규학력 외의 학력계재를 금지한 공선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취지상 정규학교나 과정을 포함시킨 일체의 표시는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유권자에게 강하게 인상 지우고 선거인의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와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졸업·중퇴·수료·수학·재학 중 등의 표시와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의 학력이 아닌 대학원 연구과정을 수학한 사실이 있을 뿐 임에도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에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총동문회 이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라고 기재한 것은 공선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계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998. 12. 22 서울고법 98노2589).

② 대학원과정에서의 졸업과 수료의 개념

대학원과정에 있어서는 '수료'와 '졸업'이라는 개념이 관련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문상 명백히 구별하여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수료(修了)'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학과를 다 배워 끝냄'이라는 것이고, '졸업(卒業)'의 사전적 의미는 '학생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과 과정을 마침'이라는 것으로서 그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양자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별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아직 박사학위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명함에 자신의 학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학위취득 내용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않은 채 단지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행정학 전공)'이라고 기재한 것만 가지고는 선거인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학력에 관하여 오인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2005. 4. 29. 대법원 2005도1259).

3. 헌법재판소 결정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위헌소원(2000. 11. 30. 99헌바95)]

-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전벽보 등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고 이로써 선거인의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정규학력을 정확히 게재하게 하는 입법수단과는 다른 입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이 제한받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나, 이러한 제한효과와 민주절차의 중심이 되는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과의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② 우리 법제는 학교교육을 특별히 규율하여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학교교육에 연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중시하

여 학교의 종류, 설립, 경영, 교원, 교과과정,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 등에서 학교교육제도를 엄격히 관리·통제함으로써 다른 교육과 구분하고 있으므로 정규학력과 비정규학력이 학력의 평가 등에서 동등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정규학력과 비정규학력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후보자 학력 기재에 관한 처벌법규의 입법연혁과 관련규정의 내용을 살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정규학력의 기재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덧붙여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않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고려해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정규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내지 학위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일컫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성요건상의 명확성을 결여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법원 판례

- 선거공보상의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는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위 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그것이 학력란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되어 있고,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소정의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한다(1999. 6. 11 대법원판결 99도307).
- 선거공보나 소형인쇄물상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이산’라고 기재한 것은 그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원고 ○○○이 위 과정을 수료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비록 그것이 다른 학력들과는 별도로 다른 경력들과 함께 기재되어 있고, 수료라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는 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비정규

학력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를 근거로 한 관할 선관위의 경고 및 공고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2001. 2. 9 대법원판결 2000수209).

- 피고인이 아프리카주의 시에라 리온(Sierra Leone) 공화국에 있는 '시에라 리온 대학교(University of Sierra Leone) 경영학과'를 원격과정으로 졸업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 학력 부분에 교육과정명인 '원격과정'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국립LEONE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영학과 4년 졸업'이라고만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2004. 5. 13. 대법원 2003도7058).
- 기자의 취재에 허위학력을 답변하여 기사화 된 것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여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출마예상자에 대한 경력 및 학력을 취재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전화를 한 지방일간신문 주재기자에게 “○○고로 전학갔다”라고 말을 하여 지방일간신문에 자신이 마치 ○○고를 졸업한 것인 양 기사가 실리도록 하고, 1996. 3 초순경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에게 전화를 한 또 다른 기자에게 “○○고와 ○○대 법대를 나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여 자신이 마치 ○○고와 ○○대 법대를 졸업한 것인 양 기사가 실리도록 한 것은 허위의 학력을 공표한 것이다(1996. 11. 19 서울고등법원판결 96노2117).
- 피고인이 의정보고서에 '○○대학교 교육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하면서 그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2005. 12. 22 대법원 2004도7116).

5. 주요 질의선례

○ 정규학력의 의미

○○ 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 최고관리자과정 제1기 동문회 고문(현),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제1기 고문, 산업대학원 제1기 고문, 행정대학원 제1기 원우회 회장, 산업대학원 제1기 원우회 회장,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학생회장, 대학교 정책대학원 수료, 경영대학원 수료는 교

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내용으로서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란에 게재할 수 없음(1997. 4. 18 회답).

○ 명예박사, 초청연구원 등 경력 게재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과 경력방송 원고에 명예박사 또는 대학교에서 인정되는 명예교수, 객좌교수 등을 후보자의 경력으로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2000. 3. 28 회답).

하버드대 초청연구원으로 재직 한 자가 선전벽보·선거공보에 후보자의 경력으로 연구기간 및 그 연구과정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2000. 3. 29 회답).

○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게재방법

선전벽보 등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우선 표기하고 현재의 학교명은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을 것임(2000. 3. 6 회답).

○ 선전벽보 등에 원격대학 학력 게재

서울디지털대학 등 평생교육법 제22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격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제8조(학력인정)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선전벽보 등에 귀문의 학교명과 수학기간을 학력으로 게재할 수 있을 것임(2002. 4. 4 회답).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81호, 2007. 9. 20. 공포]

1. 제정이유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84호, 2007. 5. 25. 공포, 2007. 8. 26. 시행)됨에 따라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업무·구성 등에 관한 사항, 개성공업지구 투자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왕래·교역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업무·구성(안 제2조 및 제3조)

협의회는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자금 및 기반시설의 지원(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1) 개성공업지구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나 기반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개성공업지구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용수공급시설의 건설비,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건설비 등으로 하고, 도로·철도·공동구(共同溝)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개성공업지구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의 범위에 관한 해석상 분쟁의 소지를 없앴.

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9조)

(1)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 (2) 국내 공단에 준하여 개성공단의 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국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국내기업과 동일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왕래 및 교역에 관한 특례(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1) 법의 취지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왕래 및 교역에 관한 특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2) 개성공업지구 출입 시 통일부장관에 대한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으로써 세관장에 대한 통행차량등록신청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의 방문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반출·반입신고의 간소화를 위하여 반출·반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하도록 하고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라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3) 개성공업지구의 왕래 및 통관 절차 간소화로 관련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282호, 공포 2007. 9. 20.】

1. 개정이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고 입양휴가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19722호, 2006. 1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군인과 공무원 사이의 복무 운영상 형평을 유지하고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제도들을 정비·신설하는 한편, 연가일수 산출 방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가일수 및 산출방법 조정(안 제39조의2 신설)

국가공무원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군인의 연가일수를 21일로 축소·조정하고, 휴직 등으로 실제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을 연가일수 산출에서 제외하며, 연가 일수 산출 방식을 신설하는 등 연가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

나. 공가(公暇) 및 청원휴가의 사유와 휴가기간의 조정(안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제1항 신설)

국가공무원의 공가사유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군인이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공가사유로 추가하고, 혼인·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청원휴가의 기간을 축소·조정함.

다. 여성 군인의 출산휴가제도 등 보완(안 제39조의4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 (1) 여성 군인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 60일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공무원의 경우보다 짧고, 임신 중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국가공무원과 다르게 휴가를 주는 규정이 없어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2) 여성 군인에게 산전(産前)과 산후(産後)를 통하여 종전보다 30일이 늘어난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되 산후에 45일이 배정되도록 하고, 앞으로는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차이를 두어 유산·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며, 유아를 가진 여성 군인에 대하여 일정 시간을 육아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3) 공무원 및 민간 근로자의 출산휴가 규정에 상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정비함으로써 여성 군인의 출산 장려, 임신부의 건강보호 및 육아시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상휴가제 신설(안 제39조의5제4항 신설)

- (1) 전방의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군인에 대하여 앞으로는 한 달에 3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업무의 특성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함으로써 근무의욕을 높이고,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군인과 비교하여 근무시간에 형평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286호, 2007. 9. 27.공포]

1. 개정이유

병역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재징병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8447호, 2007. 5. 17. 공포, 2007. 10. 1. 시행)됨에 따라 재징병검사의 대상 및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자료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징병검사 제외대상 및 검사시기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 (1)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5년 이내에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이나,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징집 또는 소집이 결정된 사람 등은 재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의 연기사유가 없어진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재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3) 재징병검사 제외대상과 검사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징병검사 여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병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안 제63조 및 안 제63조의2 신설)

- (1)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소집을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직무교육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대상인 공익근무요원 중 질병 등으로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교육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3)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 교육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 범위(안 제64조의3 신설)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의 복무를 지방병무청장이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현장복무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복무부실을 예방하고, 행정관서요원의 고충을 들어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며, 복무의 무위반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제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65조의3 신설)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복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개월 이상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가족의 병간호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분할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중단기간 중 재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함.

마. 자료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제171조제8항 신설)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가운데 병무청장의 자료제출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87호, 2007. 9. 27. 공포]

1. 제정이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법률 제8403호, 2007. 4. 27. 공포, 2007. 10. 1.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 질병의 범위,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성 질병의 범위(안 제2조 및 안 별표 1)

- (1)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함에 따라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2)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과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振顛)으로 함.
- (3)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안 제4조)

- (1) 장기요양신청을 하는 자가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공단 소속 직원이 조사하여 확인한 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3) 장기요양급여 신청자의 신체상태 및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기준(안 제5조)

- (1)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판

정하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등급의 분류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심신의 기능저하 상태를 측정한 결과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의 등급을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산정하여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부여함.
- (3)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급 및 판정기준을 정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협제도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

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안 제6조)

- (1)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3) 신체상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한편, 유효기간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마.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안 제9조)

-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하고,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로 함.
- (3)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재가요양사업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안정적인 제도 시행이 기대됨.

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9조 및 제20조)

- (1) 장기요양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2)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고, 위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으로 하는 한편,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함.

- (3)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들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289호, 2007. 9. 27. 공포]

1. 개정이유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분뇨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014호, 2006. 9. 27. 공포, 2007. 9. 28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 재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의 개선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등을 정하는 한편, 방류수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분뇨수집·운반업 등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기준과 영업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하수처리와 관련한 교육의 대상자·교육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안 제17조)

- (1) 일정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처리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수 처리수를 공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도록 함

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범위와 재이용하여야 하는 양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 (2)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공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함.
-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 및 수량을 정함으로써 하수 처리수의 재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의 정비(안 제24조제2항)

- (1)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오수발생량의 규모에 따라 정할 필요성이 있음.
-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할 수 있는 지역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수세식 변기마다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3) 하수처리구역 안과 밖의 구분에 따라 적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오수배출량이 적은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오수량이 증가된 건물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의 개선(안 제25조)

- (1) 건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 (2)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 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를,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를 각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증설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로 하되, 해당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주기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함.

(3)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용량증설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안 제35조제2항)

- (1) 일정한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원인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는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 (2)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오수를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에게 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상수도관, 가스관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와 공항건설사업 등 일부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등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3)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도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하수의 적절한 처리와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공포]

1. 제정이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 9. 27. 공포, 2007. 9. 28.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세부계획의 수립과 배출시설·처리시설 등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생활환경의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 및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
 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던 가축 중 분뇨의 발생량
 이 많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가축을 법의 적
 용 범위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 (2)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폐수 처
 리의 관리대상에 포함되던 소·돼지·젓소·말·닭·오리·양 및 사슴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새롭게 추가함.
- (3) 개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사 등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안 제5조)

- (1)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축사 등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2) 축사 등의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
 처리시설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
 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되,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 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 (3) 축사 등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
 로써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안 제6조 및 제7조)

- (1)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의 기준과 배출
 시설 설치허가의 세부방법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 (2) 돼지·소·젓소·말 등 주요 가축별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을 정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설치허가를 하도록 함.

- (3) 축산농가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대상 및 허가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축분뇨 배출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등(안 제9조 및 부칙 제2조)

- (1)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도 설치하도록 하되,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등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등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되,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2011년까지만 유효하도록 함.
- (3)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의무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7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96호, 2007. 9. 28.공포]

1. 제정이유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법률 제8385호, 2007. 4. 25.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기초노령연

금의 지급기준, 연금지급 신청절차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비율을 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노령연금수급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 제8557호, 2007. 7. 27.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조회 가능한 금융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안 제2조)

- (1) 법률에서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연금 지급대상인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함.

나. 연금의 신청 및 연금지급 결정(안 제6조)

연금을 신청하는 자는 연금지급신청서에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연금 지급여부의 결정내용을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다. 금융정보 등의 범위(안 제7조)

- (1)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노령연금수급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연금을 신청하려는 자의 동의 서면을 받아야 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조회할 수 있는 금융정보의 범위를 요구불예금은 6개월 이내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잔액 또는 총불입액으로 하고, 신용정보의 범위를 대출현황 및 연체내역 등으로 하며, 보험정보의 범위를 보험증권은 해약시 환급금, 연금보험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함.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비용 부담비율(안 제16조제1항 및 별표)

- (1)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금 비용을 분담하도록 함에 따라 그 비용 부담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연금 비용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90까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298호, 2007. 9. 28. 공포]

1. 개정이유

「도시개발법」의 개정(법률 제8376호, 2007. 4. 11. 공포, 2007. 10. 12. 시행)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변경(안 제7조제2항)

- (1) 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는 환경성검토의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는바,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의 결과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 (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성검토의 결과를 사전환경성검토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범위(안 제9조의3 신설)

- (1)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시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도시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새로 편입되는 토지가 없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감소와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의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합이 기존의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대비 100분의 10 미만인면서 3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의 증가 또는 감소로 정함.

다.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방법 및 절차 등(안 제31조의2 신설)

- (1) 법률에서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시하고, 공사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하고,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감리를 하도록 함.

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조성토지 확대(안 제46조제2항 단서)

종전에는 일정한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및 공장용지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공급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명확화(안 제46조제6항 신설)

- (1)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경쟁입찰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
- (2) 경쟁입찰대상 토지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

축하기 위한 토지인 때에는 경쟁입찰대상 토지 중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 상업면적에 대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상업면적에 대하여는 낙찰가격을, 상업면적 외에 대하여는 감정가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합한 가격을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으로 함.

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조성토지 확대(안 제4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1)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려는 사업시행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고,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 되는 문제가 있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0호, 2007. 10. 1.공포]

1. 제정이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 9. 27. 공포, 2007. 9. 28.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총 질소·총 인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초지·농경지 확보 면제대상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제2항)

- (1) 배출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변경신고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 가축분뇨 처리방식이 직접처리에서 위탁처리로 변경되거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배출시설 등을 폐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3)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액체비료화시설 설치 시 초지·농경지 확보기준 완화(안 제7조제1항제3호)

- (1) 액체비료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와 농경지의 확보가 곤란하여 축산농가가 액체비료화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음.
- (2) 가축분뇨 처리시설로서 액체비료화시설을 설치한 축산농가에서 액체비료의 살포를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축산농가의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의무를 면제함.
- (3)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를 통하여 쉽게 액체비료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액체비료의 살포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안 제11조제1항 및 별표 3)

- (1)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가축분뇨의 총 질소 및 총 인의 함량을 줄이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의 신고대상시설과 그 밖의 지역의 허가대상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현행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외에 총 질소 및 총 인 기준을 추가함.
- (3) 총 질소 및 총 인에 대한 정화처리시설의 관리 강화로 가축분뇨로 인한 하천 및 호소의 수질 악화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액체비료살포기준 강화(안 제13조 및 별표 4)

- (1) 액체비료가 농작물에 흡수되지 못하고 수계로 흘러내릴 경우에는 액체비료에

포함된 고농도 유기물이 오염원이 되어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므로 액체비료 살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비가 내릴 때나 얼어붙은 토지에는 액체비료를 살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종전에 고시로 정하던 액체비료 살포에 대한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함.
- (3) 액체비료 살포기준이 강화되어 액체비료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배출시설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설정(안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 (1) 법률에 배출시설 설치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비밀배출관 등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가축사육을 그만두고 배출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3) 가축분뇨를 다량 배출하는 허가대상시설의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재활용신고자의 시설기준 완화(안 제26조제2항제4호)

- (1) 가축분뇨의 재활용을 통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시설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2) 재활용신고자가 축산농가의 자원화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함.
- (3)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자가 시설의 설치 없이 가축분뇨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의 자원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타시·도 제정조례

①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6
----------	-----

제출년월일 : 2007년 월 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국내협력계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관련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존 국제협력기금을 대외협력기금으로 확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국제협력기금을 대외협력기금으로 개칭하고, 대외협력기금 내에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을 별도로 분리 설치함.(안 제4조)
- 나. 계정별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조성 및 지출 등 운용·관리를 독자적으로 수행함.(안 제8조)
- 다. 국제협력계정 기금의 용도를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확대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도모함.(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142조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나. 예산조치 : 국내협력계정(일반회계 출연금), 국제협력계정(일반회계 출연금)

다. 기 타

(1)입법예고 : 입법예고(2007.7.30 ~8.8) 결과 의견 없음

(2)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규정한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의 자치구는 제외)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외국 지방정부'라 함은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국내협력계정
2. 국제협력계정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기타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국내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② 국제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가. 국내협력계정 : 경영기획실장

나. 국제협력계정 : 산업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국내협력계정 : 기획담당관

나. 국제협력계정 : 국제협력과장

3. 기금출납원은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국내협력계정에 대해서는 국내협력계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국제협력계정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계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이하 “계정별 위원회”라 한다)하고 각 계정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①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계정별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정책기획관, 산업국장, 건설기획국장, 소방방재본부장

2.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

3.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계정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10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 ① 계정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계정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정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계정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쌀 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69
----------	-----

발의연월일 : 2007년 9월 일

발 의 자 : 이주상·노영호의원 등 62인

주 문

WTO 체제와 쌀관세화관련협상 타결 이후 쌀 수입증가로 인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지원액 결정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하향 조정 하려는 최근 일부 부처의 움직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에 경기도의회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목표가격을 현행대로 유지 또는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쌀 소득 보전 직불제의 목표가격을 현행대로 유지 또는 상향 조정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농가의 약 75%가 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소득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쌀 가격의 하락은 농가소득의 직접적인 감소를 초래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또한, 2000년 이후 도시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은 80% 이하이고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29%를 넘는 등 농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쌀 소득의 직접적인 감소는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을 저해하고 고령 농가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임

둘째,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켜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직불금 산정의 핵심이 되는 목표가격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특히, 인건비, 비료값, 토지용역비 등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과 목표가격 설정시 참고한 2003년 농업인의 수취 가격 수준을 반영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여야 할 것임

셋째, 목표가격의 하향 조정을 주장하는 일부 정부 부처는 쌀 시장 개방 충격 완화와 정부 예산 문제 등에 따라 목표 가격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으나 현행 목표 가격 산정 방식은 3년을 주기로 산술적인 방식에 의해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서 농업인의 소득 감소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개방 충격을 완화시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농업과 농촌의 체질을 건전하게 바꾸지 못한 채 일방적인 농업 소득 감소만으로 개방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은 농촌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하고 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것임

이에 따라 연내에 목표가격을 하향 조정 하는 것 대신 현행 목표 가격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하면서 DDA 협상 동향을 반영하고 향후 쌀 산업 제도와 국제정세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 가격을 설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표명하면서 이에 관계되는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촉구·당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③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조기 제·개정 건의안

의안 번호	264
----------	-----

제안연월일 : 2007년 9월 일

제안자 : 도시환경위원장

1. 제안이유

- 도내 북부지역이 미군공여구역과 집중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각종 규제로 공장 신·증설, 대학 유치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발전의 제약요소가 되고 있음
- 따라서 도의회 차원에서 북부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관련 법안을 긍정적으로 조기에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

2. 주 문

-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와 군 협의에 대한 재심청구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안)과
-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지역, 노후공업지역 그리고 낙후지역 정비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조기에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함

건의문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기 처리를 건의 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불이익을 감내해 온 주한미군공여구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열악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06. 3월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지역개발을 위한 소요예산을 지원하여야 할 정부는 국가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도 반환공여구역의 현실을 저버린 채 부처이기주의로 반대하여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새로운 미군기지와 사격장을 조성하면서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지역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 특히, 서울은 국립공원이라는 미명아래 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을 매입하기는 커녕 국가에서 공원을 조성까지 하여 되돌려주는 현실을 볼 때 경기도로서는 도내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납득시킬 명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지역여건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원은 물론이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라도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산되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안)도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지난 50여년간 103km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북이 대치해온 접경지역으로 여단급 이상 군부대 33개를 포함 468개의 부대가 주둔해 있으며, 30만평이상 대규모 훈련장 9개소를 비롯한 총 72개소 3,336만평의 각종 군 훈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밀집된 군사시설로 인해 지역경제는 무너지고 사람이 살기 힘든 낙후 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토지이용 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포사격 등 연중 계속되는 대규모 훈련과 군사 활동으로 인해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군사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와 군 협의에 대한 재심청구제도 신설 등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안)이 '07. 7. 2 국회 국방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군사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 **미흡하지만 수도권 일부 낙후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기 처리를 건의 드립니다.**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의 공공기관, 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의 산업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여 지역경제의 침체를 불러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에 묶여 주민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기 동북부지역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날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지역, 노후공업지역과 함께 수도권 낙후 지역에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건설교통 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여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동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빠져있는 경기동북부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도 향후 정비발전지구 지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정책적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1,100만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이 9월 정기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2007년 9월 일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① 지방자치단체 보유 공유재산 17조원 증가

- 지자체별 공유재산 보유현황 분석 결과 1년 동안 7.4% 증가 -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6.12월말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재산가액이 246조원으로 '05년(229조원) 대비 17조원이 증가(7.4%)하였으며, 토지 면적은 118km²가 증가(1.7%)한 6,954km²로 전 국토의 6.9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07. 1월 ~ 7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행정·보전·잡종)에 대한 일제 조사(매년 정기적으로 조사 통계)

□ 이번 공유재산 보유현황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 공유재산의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로서 전체 재산가액 기준으로 토지가 83.3%인 205조원, 건물이 9.8%인 24조원, 기타재산(유가증권, 공작물, 선박 등)이 6.9%인 17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05년(229조원)은 토지가 81.7%인 187조원, 건물이 10.3%인 23조원, 기타(유가증권, 공작물, 선박 등)이 8%인 18조원

- '05년과 비교하여 토지 면적의 변화는 도로·공원 등 기타재산이 6.7%(1,345km²→1,435km²) 증가 하였으며, 특히 보존·잡종재산 보다는 행정재산의 증가(기타 11.4%)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건물의 경우는 면적이 '05년(36km²)대비 2km² 증가한 38km², 건물가액으로는 4천억원 증가한 24조원에 이르며, 각종 문화·복지시설의 신축으로 인한 증가로 추정된다.

-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90.3%(222.4조원), 보존재산이 1.5%(3.6조원), 잡종재산이 8.2%(20.2조원)로 '05년 대비 순 증감액은 17조원으로 7.41% 증가하였다
- 한편 이번 조사결과 수도권과 신도시의 경우 공시지가가 높은 관계로 재산보유액이 많으며, 2005년도 대비 특별한 증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총 가액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억원)

구분	광역시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1위	서울	834,839	경기	59,620	고양	68,615
2위	부산	135,680	충남	15,783	강남	48,978
3위	대구	80,338	경남	14,355	송파	38,606
4위	대전	63,840	강원	10,617	창원	32,805

□ 행정자치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도 증대 등 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유재산의 증·감에 대한 분석도구의 연구·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공유재산의 보유·활용현황을 좀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② 2년 이상 장기공사 계속비계약제도 도입, 예산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국제입찰 범위 확대,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가치중심의 낙찰제도 확대 도입, 장기계속공사제도 개선, 계약분쟁조정 청구시 계약절차 중지신청 허용 등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2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1. 국제입찰범위 확대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로 국제입찰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행 지방계약법상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국제입찰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국제입찰이 가능토록 법령을 정비한다.

※ WTO 국제입찰대상 : 광역지자체 공사 222억이상, 물품·용역 3억이상

2.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가치중심 낙찰제도』 확대 도입

- 현행 시행중인 『가치중심의 낙찰제도』가 턱키입찰, 대안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 비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 다양한 유형의 『가치중심 낙찰제도』를 도입하고, 발주자는 공사의 특성에 맞는 『낙찰제도』를 선택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적정한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낙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관급공사에 민간의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시공에 반영하고 시공품질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3. 시공실적 품질평가

- 앞으로는 공사의 경쟁입찰 심사에서 입찰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과거 시공실적에 대한 『품질정도』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 이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시공물량만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공에 하자가 있거나 부실시공을 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시공품질』을 향상을 유도 하기 위한 것이다.
- 시공품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일정규모이상 공사의 시공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하자보수보증의 『실손 보상제도』 도입

- 현행 하자보수보증제도는 시공이 끝난 건설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3~5% 금액의 현금이나 보증서를 일정기간(1년~10년) 자치단체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실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발생금액이 계약금액의 10~20%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있어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현재의 위약금 형태에서 『실손보상제도』로 전환하여 시공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5. 계약분쟁조정 청구시 청구자의 『계약절차증지』 신청 허용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70억원 이상공사에 있어 입찰 및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업체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의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분쟁중에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분쟁조정

실효성이 없어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보다는 계약중지 가치 분신청 등 『민사소송』을 선호하고 있다.

※ 계약관련 『민사소송』 : 연간 100여건

- 개정안은 분쟁조정 신청자가 입찰 및 계약절차 중지를 요청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주청에 즉시 입찰 및 계약절차를 중지 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사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공사중지 기간 장기화 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6. 계속비계약 근거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

- 현재 시공에 2년이상 소요되는 장기공사의 경우 사업을 발주하는 방식이 총액으로 입찰 및 계약은 하되, 시공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꺼번에 확보하지 못하고 매년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시공해왔다.
 - 장기공사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초계획보다 시공기간이 늘어나고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년이상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시공기간 단축과 예산을 절감하고, 선택과 집중투자를 유도하여 분산투자를 최소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7. 기타제도 개선사항

- 50억원 이상 공사를 10% 이상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③ 새주소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새주소는 찾기 쉬운 국제공통의 주소체계

주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나 회사 또는 단체 등이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치를 알리거나 우편물을 보내는데 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찾기 쉽고 정확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고유의 번호체계로 주소를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0년간 써 온 지번주소는 주소로 사용하고자 별도로 개발한 고유의 번호체계가 아니라 일제 강점이 시작된 직후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도입한 지번체계를 빌려 쓴 것으로 엄격히 말하면 주소라고 보기도 힘들다.

지번주소는 산업화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해지고 가지 번호가 너무 많아져서 위치 찾기가 어렵고, 한 지번에 여러 집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작 주소를 알아도 목적지를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OECD국가 중 우리나라만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개도국도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세계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아가, 주소정보는 우편·택배 등 물류와 자동차길도우미(내비게이션) 등 위치정보서비스산업 촉진을 위한 국가적 자원인데 현재의 지번주소체계는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1996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친 후 사업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법적 주소도 새주소체계로 전환되도록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0월 4일 제정·공포하였고 올해 4월 5일부터 동법이 시행되었다.

새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되며, 동이름과 아파트단지명칭은 참고항목

새주소에서는 건물이 있는 도로에 이름을 붙인 뒤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왼쪽 건물에는 홀수, 오른쪽 건물에는 짝수의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도로명은 지역의 유래나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짓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군·구에 설치된 새주소위원회(종전에는 지명위원회가 담당)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같은 도로인데도 도로명은 지역별로 다르게 될 경우 주민불편 등이 예상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도로에 대해 서로 다른 명칭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와 협의하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도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도로명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자부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도로명을 보기만 해도 도로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도록 도로의 폭과 길이에 따라 폭 40미터 또는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는 대로(大路),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 또는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중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노(路), 그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길'로 끝 글자를 정하도록 하였다.(아래 그림의 영동'대로', 학동'로', 삼한'길')

<새주소 부여의 예시>



도로의 진행방향은 국제관례에 따라 '서'에서 '동', '남'에서 '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위 도로에서 분기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정할 수 있다. 건물번호는 도로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가 순차적으로 부여되는데, 도로의 출발점부터 20m간격으로 나누어진 기초구간의 좌우에 홀짝 번호가 순서대로 부여된 것이어서 위치와 거리를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학동로 3번'이라는 의미는 학동로의 출발지점에서 도로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왼쪽 측면으로 30m 들어가서 있다는 것이고, 이 건물과 학동로 7번의 건물은 모두 도로진행방향 왼쪽에 있으면서(모두 홀수이므로) 건물 사이의 거리는 약 40m $[(7번-3번) \times 10m]$ 가 된다는 것이다.

주소체계와 관련하여 지번은 법정동에서 나누어지므로 현행주소에서는 동(洞) 명칭을 사용하지만 새주소용 도로는 시·군·구·읍·면에서 분할되므로 새주소에서는 동이 사용되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 최근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 동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새주소는 이러한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단지와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명칭도 아파트단지에 대해 고유번호가 부여되므로 중복하여 표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동안 익숙해 온 동명칭과 아파트명칭을 일시에 제외시킬 경우 국민적 불편이 우려되므로 국민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주소의 맨 마지막 부분에 참고 항목으로서 괄호에 넣어 표기하도록 했다.

새주소는 사람이 살지 않는 임야 전답 등의 소재지 표시에는 사용 안 됨

새주소는 사람이나 단체 등이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에 관한 정보이므로 공적장부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일명 '맹지')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새주소를 부여한다.

반면, 아무리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산이나 논밭에 대해서는 새주소를 부여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지번을 사용한다.

또한, 새주소는 도로와 건물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지번의 분할이나 합병은 새주소와 무관하며, 새주소 관련 장부에 필지별 면적이나 지목과 같은 토지 속성에 관한 정보는 등재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번 변경 없이 재개발 등으로 도로나 건물이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면 그에 따라 새주소가 새로 부여되게 된다. 결국, 새주소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재 표시에 관한 사항은 새주소와 별도로 관리된다.

2009년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하고 주소전환사업 병행 추진

새주소 사업은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지만 워낙 방대한 사업이라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시설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101개 시·군·구가 완료하였고 2009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새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각종 거래계약서상의 주소표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주민등록, 인감 등 9천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공적장부의 주소체계 개편작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방대한 일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주소전환 종합계획 수립을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보험사, 은행, 카드, 통신사 등 고객의 주소를 관리하는 각종 민간기업에서도 새주소체계에 맞게 주소정보를 바꾸어야 한다.

한편, 주소체계 일시전환에 따른 국민적 혼란 예방을 위해 2011년까지는 현재의 지번주소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두었다. 이 기간 동안 각종 공적장부에 있는 주소정보가 차질 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민간기업의 주소전환 지원체계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새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빠르게 친숙해지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새주소 안내지도를 대대적으로 보급하며, 학교 교육에도 포함시키는 한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각 세대별로 자신의 새주소가 무엇인지를 일일이 알려드릴 계획이다.

새주소에 빨리 친숙해지도록 새주소 생활화에 힘써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새주소가 정착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위치탐색 등에 소요되던 엄청난 비용(전문기관 분석결과 연간 4조3천억원)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등 각종 응급서비스가 대폭 향상되고 물류와 위치정보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길도우미 등 위치정보서비스업은 자료수집과 갱신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어서 산업발전이 제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9년까지 새주소 전자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자료의 수집·갱신보다 서비스경쟁에 주력하게 되어 국민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새주소사업은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치정보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생활양식의 일대 혁신을 이룩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혜택이 거저 얻어지는 일이 없듯이, 이러한 효과는 국민 개개인이 새주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새주소체계에 친숙해지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④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기준 및 구조계산프로그램 개발 추진-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그동안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육안에 의존한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체계적 안전도 검사기준과 안전도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는 옥상간판, 돌출간판 등을 대상으로 허가·신고시 시군구로부터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옥외광고협회 등이 수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수료, 검사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육안 검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간판의 종류, 크기, 재질, 무게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사용자재, 접합부위 등의 적합 여부만을 판단하는 등 공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계량화 된 세부 검사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태풍이나 강풍시 간판이 추락하여 인명피해 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이에 행자부는 옥외광고물의 종류, 설치장소, 크기, 재질, 무게 등 옥외광고물 자체의 요인뿐만 아니라 기온, 습도, 풍속, 일교차, 강수량 등 외부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과학적 안전도 검사기준과 구조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법령의 개정 절차를 거쳐 '08년에는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⑤ 개선된 스쿨존(School Zone), 높아진 어린이 안전 !

- 행자부, 예산절감을 통한 시설개선 확대 등 가시적 효과 거양 -

□ 그동안 스쿨존 시설개선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에서는 좀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안전 및 통행불편 해소 등을 위해 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경찰청과 협조를 통하여 시설투자 적정화 방안을 마련, '07년 하반기 시행을 거쳐 '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03~'06까지 추진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총 4,900억원을 투자, 3,069개소를 완료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하였으나
 - 개선사업 추진시 시각적 효과를 고려한 시설위주의 투자로 효율성 저하
 -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등에 교통안전표지판의 과다·중복설치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불편 초래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지역 등 지역별 교통 환경 여건 보다는 일률적·획일적 시설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있었는 바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예산 절감을 통한 사업지구 확대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경기도의 경우 '07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칼라포장 최소화 등 시설투자 적정화 방안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통하여 당초계획 356개 학교보다 94개 학교를 추가하여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주요 시설개선 방안으로는

- 시설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소예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는 보도 설치를 최우선 고려토록 하고
-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은 안전시설 우선 설치
- 비용대비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칼라포장 경보시스템(DFS) 등 시설물 설치 최소화
- 교통안전표지 설치 최소화 등을 마련·반영토록 하였다

□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행자부에서는 '07.10월초 자치단체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08년 사업부터 추진지침에 설계단계부터 시설투자 적정화 방안을 반영토록 하고 경 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제고 할 계획이다

⑥ 자치단체 각종 신고·허가 관련 수수료 금액 통일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자치단체 간 금액의 편차가 크고, 제공원가보다 낮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 등 11종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마련하였다.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논산시 : 100,000원, 안성시 : 900원) ⇒ 20,000원 통일

-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1건당 20,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1건당 40,000원) 체육 시설업 신고 수수료(1건당 30,000원)등 11종의 수수료를 통일했다.

※ 참고 : 수수료 표준요율 개정 내용(규정 별표)

- 이번 개정으로 신고·허가 관련 행정서비스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불평등이 완화되고

- 원가분석에 의해 수수료 결정과정이 합리화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높아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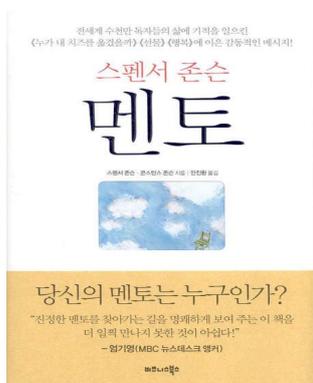
-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규정의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여야 하며, 조례 개정 전까지는 종전 조례에 의한 기존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

※ 참고 : 수수료 표준요율 개정 내용(규정 별표)

근거 법령 및 사무	단위 및 금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수수료	1건당 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수수료	1건당 3,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1통당 1,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부록 : 행복한 책 읽기



도서명 : 멘토
 저자명 : 스펜서 존슨
 출판사 : 비즈니스북스
 출판년 : 2007년
 페이지 : 208
 가 격 : 10,000원

전세계 42개 언어로 자신의 작품을 번역 출간하여 아마존닷컴에서만 4,000만 부라는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린 글로벌 밀리언셀러 작가 스펜서 존슨!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선물》 《선택》 등의 작품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사랑받아 온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스토리텔러이자 《뉴욕 타임스》 선정 최고의 베스트셀러 상 수상자, 미국의 유일한 전국 일간지 《USA 투데이USA Today》에 의해 ‘경영우화의 황제 The King of Parables’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그가 또 하나의 역작 《멘토》를 들고 다시 우리를 찾아왔다

전작들이 인생의 소중한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면 『멘토』는 내 삶의 진정한 멘토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감동적인 우화이다.

성공한 사업가 존. 그러나 객관적인 성공과 달리, 행복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도 삶 속에서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해 늘 고민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1분 멘토'라 불리는 소피아 선생의 인터뷰 기사를 접하게 되고, 바로 그녀를 찾아간다. 그리고

'1분 원칙'이라는 강의를 듣게 된다. 과연 존은 고민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주인공 존이 소피아 선생님을 찾아가서 강의를 듣는 과정을 흥미롭게 그리면서 내 안의 나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생의 멘토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특히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세우라는 점, 자신의 행위를 '칭찬'하라는 점,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자신의 행동방식을 '성찰'하라는 점 등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고 소중한 진리를 선사한다